

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사업 안내

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(I,II) 목적

-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여 청년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
 - (I 유형)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하고
 - (II 유형)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인력난 완화와 청년에게는 신규 일자리 제공

■ 지원 유형 및 내용

| 유형 | I 유형 | II 유형 |
|----------------|--|---|
| 지원 업종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5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 • 단 지식서비스, 문화콘텐츠, 신재생에너지 산업, 청년창업기업 등 예외적 가입 허용 • 연 매출액 :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 수 * 1,900만원 이상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5인 이상의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우선지원대상기업 • 연 매출액 :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 수 * 1,900만원 이상 |
| 지원 대상 청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만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(군필자는 의무복무기간에 따라 연령 제한이 연동되어 최고 만39세까지 지원 가능) • 취업애로청년(1개만 해당하면 됨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4개월 이상 실업 ② 고졸 이하 학력 ③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④ 국민취업지원제도·미래내일일경험·청년일경험지원사업 수료자 ⑤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⑥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부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 ⑦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청년 ⑧ 북한이탈청년 ⑨ 폐자영업자 ⑩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만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(군필자는 의무복무기간에 따라 연령 제한이 연동되어 최고 만39세까지 지원 가능) 모든 청년 |
| 사업주 지원금 | 720만원(1년간 지원) | 720만원(1년간 지원) |
| 청년 지원금 | | 480만원 (18개월차, 24개월 차 각 240만원씩 지원) |

▣ 세부지원내용

| | |
|------|---|
| 지원내용 |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(최대 720만원) Ⅱ유형 : 청년 근속 24개월 시 480만원 지급(청년) |
| 지원요건 | -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,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, 고용보험 가입 등 -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1년 기간동안 고용조정 이직이 있을 경우 지원 중단 |
| 지원한도 |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%(비수도권 지역은 100%)까지 지원 |

▣ 참여방법

- 고용24 누리집에서(www.work24.go.kr) 운영기관(음성상공회의소)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
-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,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, 3개월 이내 기업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
- 신청시 필수제출 서류
 - ① 사업자등록증
 - ②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(법인·개인)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(면세)
 - 2023년 또는 2024년 중 1개년도(1.1~12.31) 제출
 - 국세청(홈택스) 또는 정부24를 통해 발급 가능

▣ 지원절차

- 운영기관 지정하여 기업 참여신청(기업 적격 여부 통지)
- 청년채용 및 채용자명단 제출(청년 적격 여부 통지)
- 승인된 청년 고용 6개월 후 지원금 신청 및 심사, 지급
(홈페이지를 통해 신청, 최초 6개월분 일시 신청 후 3개월 단위 신청)

| 구분 | 회차 | 신청일 | 유형 | 지원금 | 신청자 |
|---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|
| 일반 지원금 | 1 | 정규직채용일 + 06개월 | I 유형, II 유형 | 360만원 | 기업 |
| | 2 | 정규직채용일 + 09개월 | | 180만원 | 기업 |
| | 3 | 정규직채용일 + 12개월 | | 180만원 | 기업 |
| 청년장기근속 인센티브 | 1 | 정규직채용일 + 18개월 | II 유형 | 240만원 | 청년 |
| | 2 | 정규직채용일 + 24개월 | | 240만원 | 청년 |

※ 1~3회차(일반), 1~2(인센티브) 지원금은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1, 2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, 이기간 도과하여 신청시 지원 제외

- 구체적인 참여자격, 참여제한 요건 등은 「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침」 참고

▣ 문의처

-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도약장려금 담당자 회원사업팀 임주현 과장(043-873-9922) 문의